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박성연, 강석주, 구미경,
김경훈, 김규남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남창진, 박영한,
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
유정인, 이봉준, 이상욱,
이종태, 최민규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보도공사 시 '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'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도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1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) 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,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1조의2(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) 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,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